

분납보험료 미납의 효력

이 순 관 <보험감독원 조정역>

1. 사고의 개요

1989년 2월 10일 보험 계약자 A와 보험자 B사이에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소재의 건물 및 동 건물내에 수용되어 있는 집기, 비품에 대하여 보험금액은 2천5백만원, 보험기간은 1989년 2월 10일부터 1994년 2월 10일까지 5년간, 분납 보험료는 월 48,5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아름점포종합보험 외에 2건의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후 1992년 5월 10일 위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 내부가 소손되었는데, 보험자 B가 본건 사고는 보험 계약 실효후 발생하였으므로 보상 책임이 없다고 면책 처리하자 분쟁에 이르게 되었다.

2. 서로의 이견

신청인 A는 피신청인 소속 모집인 C에게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여 오던 중 1990년 10월 30일 일시불로 3백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하였으며, 보험 계약 효력 상실 예고 통지가 와서 위 모집인 C에게 계약 부활을 요청한 바 있으며, 부활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신청인은 보험

료를 일시불로 지급하였으므로 본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신청인 B는 신청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1991년 7월 1일 본건 계약은 실효된 바 있고, 본건 사고는 실효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으며, 신청인이 보험료 3백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청인측과 모집인 C사이에 채권 채무가 있다는 것일 뿐 보험료로 납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심의

동 사안을 심의한 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각하 결정을 하였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본건 분납 보험료는 모집인 C가 징금하여 오다가 신청인 측의 요구에 의해 1990년 9월 이후로는 giro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온 사실, 그런데 신청인의 보험료 미납으로 1991년 4월 1일 본건 보험 계약이 실효된 후 신청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1991년 4월말경 본건 보험 계약이 부활되었으나 보험료 미납으로 1991년 7월 1일자로 다시 실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리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90년 10월 30일 일시불

로 금3백만원을 보험료로 지불하였다는 영수증을 모집인 C가 교부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동 영수증을 피신청인이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이 아니고, 위 모집인 C가 임의로 작성한 사제 영수증으로 어떠한 보험 계약에 대한 영수증으로 교부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매우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동 영수증 교부후에도 giro를 통하여 신청인측의 보험료 납입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동 사제 영수증의 내용과 같이 보험료가 피신청인에게 일시불로 납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관련 자료에 의하면 동 영수증 교부 이전에 신청인측과 모집인 C사이에 금3백만원의 채권·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동 사제 영수증은 바로 동 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모집인 C가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보험료를 납입해 주겠다는 의미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동 사제 영수증만으로는 보험료 납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보험 계약은 신청인이 분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1년 7월 1일 실효되었고 실효된 뒤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본건 청구는

그 이유없이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4. 맺는 글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 기간내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자의 위험 부담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의무는 보험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적 의무라 할 수 있다. 물론 보험 계약에 있어서 보험료 납입은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나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도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만이 보험금 지급 채무를 부담한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할 것이다.

그리하여 보험료 수입을 적시에 확보함으로써 보험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상법 제656조)하고 있고, 화재보험 보통 약관에서도 보험 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화재보험 보통 약관 제2조 2항) 그러므로 보험 계약에서는 보험 사고 발생전에 보험료가 납입되었는지 여부가 보험자의 보상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납입 방법

에 따라 일시납 보험료와 분납 보험료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분납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직접 납입, 금융기관을 통한 납입(giro, on-line, 자동이체 제도 등)이나 보험 회사의 방문 수금 중에서 선택하여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상법 제650조) 그런데 보험료 납입을 분납으로 한 경우 제1회 보험료가 지급되었을 때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 지급이 없어도 최초 보험료의 지급은 있으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위 상법 제656조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험자가 보험 계약으로 부터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하여는 상법 제656조의 요건을 갖추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을 분납으로 한 경우, 보험 약관에서는 보험자의 보험료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재보험 보통 약관에서도 보험 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납 관리 업무상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보험 계약에서 정한 분납 보험료의 지급 기일에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료 납입 기일로 부터 일정 기간의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을 두고, 동 유예 기간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 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동 실효 후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실효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일시납이나 분납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회사에서 작성된 일정 양식의 보험료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는 것이 후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은 채무 변제의 수령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보험 계약자가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일용 보험료 납입이 있었다는 사실로 추정되어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 계약자가 스스로 보험료 납입을 증명하여야 할 불편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료 영수증은 일종의 증거 문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절대적·확정적인 증빙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을 때에는 보험료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보험료 납입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반대로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제반 증거에 의하여 보험료 납입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보험료 납입의 효력은 발생하고 보험자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